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2조에 의하여 2025학년도 싱가포르 한국국제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본교 학부모로서 아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 등록 가능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2) 정당의 당원인 자
- 3) 타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결격 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입후보자 등록기간 : 2025. 3. 8.(토) ~ 3. 14.(금) 13:00까지

다. 입후보자 등록방법 :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사무국 및 학교메일(info@skis.kr)

라. 구비서류 : 입후보 등록서 1부(등록서는 사무국 비치 및 학교홈페이지 탑재), 사진(3×4cm) 1매

2. 위원선거

가. 일 시 : 2025. 3. 20.(목) 학부모 교육과정 설명회 시

나. 장 소 :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강당

다. 선출인원 : 학부모위원 4명(유·초·중·고 학부모 각 1명)

라. 선출방법 : 직접선거

(단, 입후보자 수가 위원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투표를 실시하지 않음)

3. 당선자 발표 : 2025. 3. 20.(목) 선거일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5년 3월 7일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